



10월 1주 개인정보보호 주간동향(제 30호)

□ 기사통계(10. 1 ~ 7)

※ 1주일간 있었던 10대 트렌드 주제별 기사 건수와 이슈화 된 주제의 기사 건수 통계 제공

주제	빅데이터	클라우드	암호화	동의만능주의	피싱	잊혀질권리	주민번호	CCTV	모바일메신저	대체수단	기타(유출)
건수	3	0	0	0	14	0	0	1	0	0	7
증감	+2	-	-	-	-1	-	-	0	-	-	-6
연간 누적	114	12	20	9	318	29	35	56	8	13	301

□ 주요기사

※ 1주일간의 기사 중 많은 언론에서 다룬 주요기사 내용 발췌

1. "개인정보 전담부처 만들자" 변재일 의원, 개정안 발의 (디지털타임스)

-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처를 만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'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'을 대표 발의함
- 이 개정안은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산하에 개인정보보호원(가칭)을 두는 전담 부처로 구성하자는 것이 골자임

2. '사이버범죄 연간 10만건 발생, 사이버테러 검거율은 줄어' (아주경제)

-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강동원 의원은 2010년 이후 매년 약 10만 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이버테러형 범죄의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밝힘
- 한편, 사이버범죄자들에 대한 검거율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□ 이슈

※ 국제기구, 해외 정부, 관련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보고서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내용 요약과 시사점

1. OECD, 2013년 개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

[바로가기](#)

이슈 1 : OECD, 2013년 개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

□ 개요

- OECD 이사회는 2013년 7월 11일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가이드라인(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)의 개정안을 채택함
 - 이 개정안은 1980년에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이래 처음이며, 2008년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서울 선언문의 지침 “변화하는 기술, 시장과 이용자 행태, 증가하는 사이버 정체성의 중요성”에 따라 가늠하고자 하는 장관들의 요청에 의해 개정됨

-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두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음
 - 위험관리에 기초한 접근법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의 현실적 이행에 초점을 둠
 - 향상된 상호운용성에 기초하여 글로벌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짚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

□ 주요내용

-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범위
 -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 관계없이 그 처리방법, 성질 또는 사용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의 자유에 위협을 초래하는 개인정보에 적용됨
 - 본 가이드라인의 원칙들은 상호보완적이며 전체로써 읽혀져야 함
 - 국가주권, 국가보안, 공공정책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예외사항은 공지되어야 하며 가능한 최소한으로 해야 함
 - 이 가이드라인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 최소한의 표준으로 간주되어야 하며, 개인정보의 국외

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음

1. 국내적용의 기본원칙

○ 수집제한의 원칙

-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제한이 있어야 하고, 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얻어져야 하며, 정보주체의 인지 또는 동의가 있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수집해야 함

○ 정보 정확성 원칙

- 개인정보는 사용목적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확하고, 완전하며, 최신의 것이어야 함

○ 목적 명시 원칙

-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은 수집 이전 및 당시에 명시되어야 하며, 개인정보의 이용은 명시된 수집목적 또는 수집시 목적, 목적 변경시 명시되는 목적과 상충하지 않아야 함

○ 이용제한의 원칙

- 개인정보는 명시된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되거나 이용가능 또는 기타 사용될 수 없음. 단,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,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에는 가능함

○ 안전성 확보의 원칙

- 개인정보는 손실 또는 권한 없는 접근, 파괴, 사용, 수정 또는 공개에 대

한 적절한 안전조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

○ 공개의 원칙

-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발, 실행,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공개방침이 있어야 하고, 그 방법은 정보관리자의 신원 및 주소를 비롯하여 개인정보의 존재와 성질, 정보의 이용목적 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

○ 개인 참여의 원칙

- 개인들은 정보관리자로부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관리자가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권리를 가짐
- 자신에 관한 정보와 통신할 수 있는 권리(적절한 시간 내, 유료라면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, 적절한 방법으로, 개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형식으로)
- 위의 2가지 요청이 거부된 경우, 그 사유를 알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
- 자신의 정보와 관련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제기가 수락된 경우, 그 정보를 삭제, 정정, 완성, 수정할 수 있는 권리

○ 책임의 원칙

- 정보관리자는 상기 원칙들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따라야 하는 책임이 있음

2. 책임 이행

- 정보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관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

있어야 함

- 관리 하에 있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이 가이드라인을 실행함
- 자신의 조직의 구조, 규모, 용량, 민감도에 맞게 만들어야 함
- 프라이버시 위협 평가에 기반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함
- 거버넌스 구조에 통합되고 내부 감시 메커니즘을 설립해야 함
- 사고 및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해야 함
-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업데이트 되어야 함

○ 개인정보보호 관리 프로그램의 적절함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

- 개인정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보안 유출이 있을 때 개인정보보호 집행기관이나 다른 관련 기관들에 적절한 통지를 해야 함
 - 정보관리자는 영향을 받은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함

3. 국내적용의 기본원칙: 자유로운 이동과 합법적 제한

○ 정보관리자는 데이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자신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책임이 있음

-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한을 삼가 해야 함
 - 다른 나라가 이 가이드라인을 대체로 준수할 경우
 -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과 정보관리자로부터 이 가이드라인과 일관성 있는 지속적인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의 충분한 보호 조치가 존재할 경우

-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는 위험에 비례해야 하며, 데이터의 민감도와 처리에 대한 목적과 사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

4. 국내 이행

- 이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해 회원국들은
 - 정부 기관간의 통합된 접근법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 개인정보보호 전략을 개발해야 함
 -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을 채택해야 함
 -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,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, 자원, 기술적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정보보호 집행기관을 설립하고 유지해야 함
 - 행동 강령의 형태 또는 다른 형태로 자기 규제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함
 - 개인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해야 함
 -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를 위해 적절한 제재 및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함
 - 교육과 인식제고, 기술발달,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조치의 촉진을 포함한 보완조치의 채택을 고려해야 함
 - 정보관리자 이외의 행위자의 역할을 개별 역할에 적합하게 고려해야 함
 - 정보주체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이 없도록 보장할 것

5. 국제협력과 상호호환성

- 회원국은 특히 개인정보보호 집행기관 사이에서의 정보공유를 강화함

으로써, 국경간 개인정보보호법 집행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

- 회원국은 이 가이드라인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는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에 상호운용성을 촉진하는 국제 협정의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함
- 회원국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대해 알리기 위해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지표의 개발을 장려해야 함
- 회원국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공개해야 함

맨위로

- 본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- 구독신청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☺
-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기획부 김은정 수석연구원 E : kimej@nia.or.kr / T : 02) 2131-0781